

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(정정)

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(인정)조사 계획과 관련하여,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2일

국가유산청장

1.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

분류	대상종목	신청요건
보유자	○ 국가무형유산 ‘대목장’ - 궁궐, 사찰,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목수	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. 해당 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2. 해당 분야 시·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, 이수자 3.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

※ 일반전승자: 「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·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,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유산의 기능,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
-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2. 신청자료 제출

○ 제출서류(A4 사이즈 책자 1권 + usb 1개)

① [붙임 1]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(개인종목)

② [붙임 2] 자료활용 동의서

③ 동영상 파일

※ 관련 근거 : 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694호)

④ [붙임 3] 보유자 인정관련 확인서

○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

- ①~④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(①~④ 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)

- ①과 ②는 하나의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만들어 제출(부피 최소화)
- ①, ②와 ③을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
 - * ①, ②, ④ 서류는 책자와 파일로 모두 제출
- ①의 ‘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(개인종목)’ 작성 요령
 - 증빙자료(홍보책자, 상장, 인증서, 이수증 등)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
 - 본인이 참여한 전통건축수리 등(예-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 실적증빙)
 -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
- ③의 ‘동영상 파일’ 제작 요령
 - 동영상 파일은 usb에 넣어 제출. 40분 이내 분량으로 편집
 - 안동 봉정사 대응전 정면 어칸(중앙칸) 주심포 전체 제작과정 및 전송 시설(공방 등), 장비, 도구 등 포함
 - * [참고 1] 안동 봉정사 대응전 정면사진, 설계(정면도)
- 제출방법 : 우편제출 ※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
 - 주 소 : (우)55101 /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,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
 - 담당자 : 전통기술 담당(조이레 ☎ 063-280-1646~7)
- 공고기간 : 2024. 3. 4.(월) ~ 2024. 8. 23.(금)
- 제출기간 : 2024. 8. 14(수) ~ 2023. 8. 23.(금) / (10일간)
 - * 8월 23일자 소인까지 유효

3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(개인정보 등)는 외부에 비공개하며,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
-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(개인종목)와 같이 총 3단계로 실시되며, **각 단계별 조사결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조사를 실시함.** 단, 무형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정조사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
 - ※ 2단계 및 3단계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 세부 일정을 추후 공지 예정
- 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694호)」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>법령정보>훈령·예규 코너의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람
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4.5.17.시행)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(063-280-1646~7<전통기술 담당>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

- 붙임 1.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(개인종목) 1부.
 2. 자료활용 동의서 1부.
 3.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1부.

[붙임 1]

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(개인종목)

<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>

종목내용	종목명칭	국가무형유산 (명칭 : _____)	
조사대상자 인적사항	성 명	(예명)	(한자)
	생년월일	(만 세)	
	연 락 처	(주택)	(휴대폰)
	주소	(우편번호) (※ 공방주소 포함)	
	*개인 정보 취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	
입문현황	입문시점 및 전승기간	_____년	_____년부터 _____년 현재까지 (_____년 종사)
	입문경위	※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	
전수활동 경력	○ 이수자 : _____년 월 ~ _____년 월 ○ 전승교육사 : _____년 월 ~ _____년 월		
주요 전승활동 실적	※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		
공개행사 참여실적	"		
관련분야 입상실적	"		

다음과 같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.

_____년 _____월 _____일

_____ 작성자 (서명 또는 인)

붙임 :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(개인종목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※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(개인종목)

1.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※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,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

2. 주요 전승활동 실적

※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
※ 최근 10년간 전승활동(공연 및 전시)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(홍보책자) 등을 첨부함.

3. 공개행사 참여 실적

※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(홍보책자 등)를 첨부함.

4. 관련 분야 입상 실적

※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(상장)를 첨부함.
단,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.

5.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

※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.

6. 전승 관련(공방 또는 전수관) 시설 및 장비 현황

※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.
-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**<자료 활용 동의서> 첨부(별지 제3호서식)

7. 해당 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

※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, 시·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(인정서, 이수증)를 제출함

※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.

자료활용 및 촬영(기록) 동의서

작성자	성명:	생년월일:
	주소:	
	연락처:	

자료목록

연번	자료명칭	수량	규격	제작자 성명

상기 본인(본 단체)는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,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에서 이뤄지는 영상촬영(음향 기록)에 동의하며, 위 제출한 자료(동영상, 이미지 등)가 지정 또는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(필수)

※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(조사실시) 제3항에 의거하여 본인(본 단체)의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,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위한 활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(필수)
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동의(선택)

※ 상기 제출 자료(동영상, 이미지 등)와 조사에서 촬영된 자료(영상, 음향)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, 공개, 복제, 촬영,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 년 월 일

 작성자: (서명 또는 인)

작성자가 요청 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 사항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

본인은 무형유산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해제 사유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1.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2.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

또한 보유자 인정 이후에라도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8. .

국가무형유산 대목장
보유자 조사대상자 _____(인)

[참고 1] 안동 봉정사 대웅전



그림 1 사진출처 -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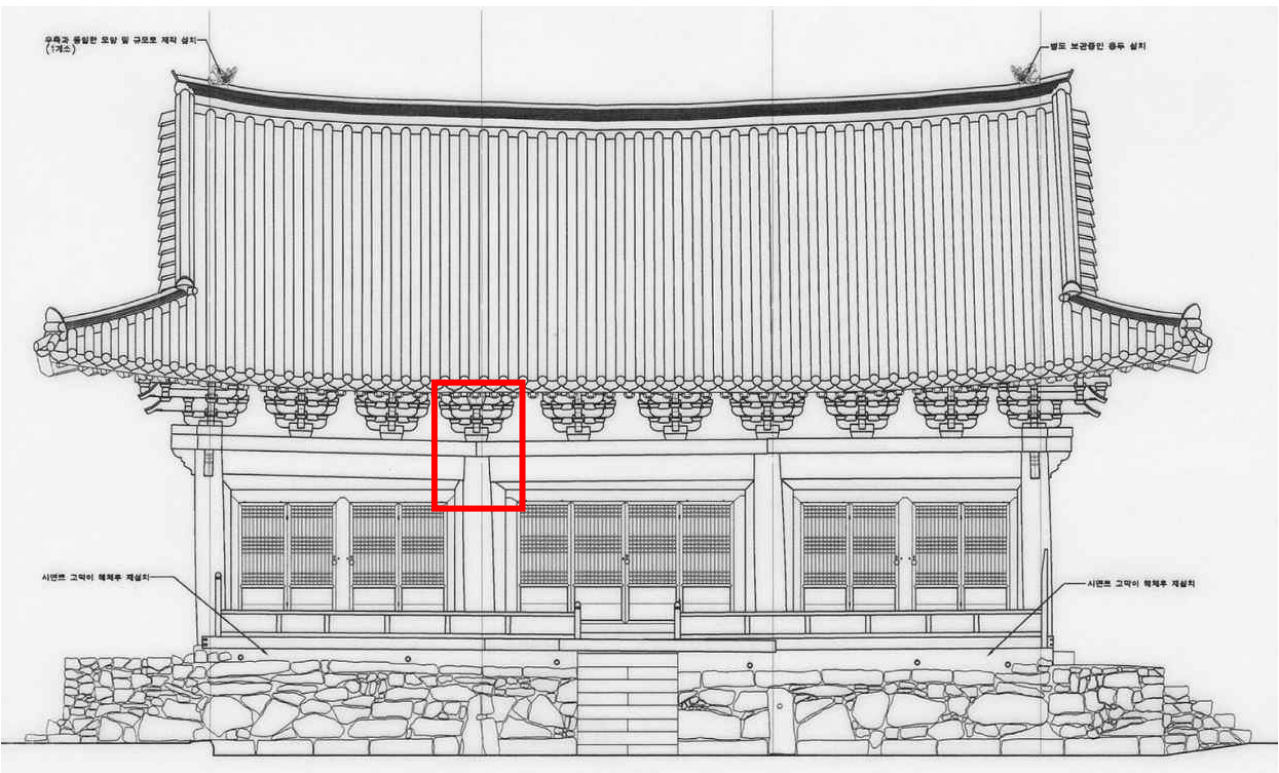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사진출처 -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

‘’ 1:1 SCALE 제작